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203-5750), 임미정 사무관(203-5752)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결과

□ '14.10.15(수)~16(목)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이 하루 연장되어 **17(금) 완료**되었음.

※ 참석자

- **우리측 :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수석대표)** 外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
- **뉴질랜드 :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 차관보(수석대표)** 外 외교통상부, 일차산업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

□ 금번 회의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등에서 남은 대다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음.

□ 양측은 이번 협상의 논의 결과가 한·뉴 FTA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 044-203-5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한-뉴질랜드 교역·투자 현황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673 (0.4)	699 (3.9)	825 (18.0)	891 (8.0)	918 (3.1)	1,104 (20.2)	1,465 (32.7)	1,491 (1.8)
수 입	967 (8.6)	1,171 (21.1)	1,122 (△4.2)	879 (△21.6)	1,176 (33.7)	1,474 (25.4)	1,339 (△9.2)	1,395 (4.1)
무역수지	-294	-472	-297	12	-258	-370	126	97
총교역액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 '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교역파트너 (수출 44위, 수입 41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13)
뉴질랜드의 대한국 투자	168 (3)	471 (5)	57 (1)	340 (4)	30,718 (7)	359 (4)	458 (5)	495 (3)	70,471 (87)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	21,544 (28)	38,213 (34)	15,801 (27)	13,480 (13)	14,781 (20)	48,835 (22)	23,255 (16)	13,378 (27)	416,385 (519)

※ '13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는 대한국 제48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61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3년)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휘발유	0-5	420	28.2	원목	0	347	24.9
승용차	0	246	16.5	낙농품	8-176	172	12.3
경유	0-5	225	15.1	기타석유화학제품	2-8	169	12.1
건설중장비	0-5	59	4.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0-3	118	8.5
합성수지	0-5	50	3.4	가축육류	3-72	117	8.4
기타어류	0	26	1.7	펄프	0	61	4.4
석도강판	0	25	1.7	제재목	5	44	3.2
화물자동차	0-5	24	1.6	단백질류	8-20	37	2.7
인쇄용지	0	22	1.5	과실류	5-612	35	2.5
타이어	0-5	21	1.4	고철	0	22	1.6
소 계		1,118	75.1	소 계		1,122	80.6
전 체		1,491	100	전 체		1,395	100

※ 우리 휘발유·경유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미 무관세(0%) 적용중

※ MTI4단위를 HS4단위와 연계하여 관세율 계산